

의안번호	2202983
의 퇴 인	오세희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8.
추계번호	24D2971
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및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)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매년 4,400만원씩,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억 2,000만원(연평균 4,4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(안 제29조)	35	35	35	35	35	175	35
자문위원회(안 제42조)	9	9	9	9	9	45	9
합 계	44	44	44	44	44	220	4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8조(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)	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29조(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)	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불공정한 행위 유형의 조사 등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31조(위반행위의 조사 등)	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42조 (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)	온라인 플랫폼 부문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8조(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)	—	미대상: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장조사는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29조 (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)	○	
3	안 제31조 (위반행위의 조사 등)	—	미대상: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,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4	안 제42조 (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실태과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(안 제29조)

- 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유형의 조사,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경쟁 제한행위 유형 조사,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용역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3,500만원으로 추정
 - 공정거래위원회의 ‘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’사업에서 지원되는 ‘플랫폼 분야 등 제도 개선 연구용역’의 소요예산 3,500만원(2024년)을 준용하여 추정

[표 2] 실태과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실태과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	35	35	35	35	35	17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자문위원회 설치(안 제42조)

-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부문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연간 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추계 방법은 위원수에 회의수당 및 연간 회의 개최횟수를 곱하여 추정함
 - (위원 수) 제정안에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

- (회의수당) 회의수당은 20만원¹⁾으로 가정함
- (연간 회의 개최횟수) 연간 회의 개최횟수는 유사 위원회의 연간 개최회의 수를 참조하여 3회로 가정
 -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자문위원회인 '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'의 연간 개최회의수 3회(2021.7~ 2022.6) 및 2회(2022.7~ 2023.6)를 참조하여 3회로 가정
- (소요비용) 자문위원회 설치 시 소요비용은 연간 900만원(15명×20만원×3회)으로 추정됨

[표 3] 자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자문위원회	9	9	9	9	9	4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,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2억 2,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	35	35	35	35	35	175
자문위원회	9	9	9	9	9	45
합 계	44	44	44	44	44	2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내(서면심사 100,000원내)에서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(220목) 또는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(기획재정부,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, 150쪽)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